

역학조사관에 대해 실시하는 교육·훈련 (제16조의2제2항 관련)

1. 역학조사관에 대한 신규 교육·훈련

가. 역학조사관에 대한 신규 교육·훈련과정은 2년 과정의 현장중심 직무교육훈련 과정으로 1회의 기본교육 및 6회의 실무교육 과정으로 실시하되, 과정별 교육·훈련 시간 및 내용은 나목 및 다목과 같다.

나. 교육·훈련 시간

- 1) 기본교육: 120시간 이상
- 2) 실무교육: 144시간 이상

다. 교육·훈련 내용

1) 기본교육

가) 역학조사관 제도, 역학조사관의 권한·임무, 가축전염병의 역학적 특성, 가축전염병의 예방접종 정책 등에 관한 사항

나) 역학통계, 위험도 평가, 역학조사 기법, 가축전염병 예찰체계와 정보관리,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독 등 방역 조치에 관한 사항

다) 가축전염병 역학조사, 농장 및 축산시설 등 조사, 가축전염병의 진단, 역학조사를 위한 시료 채취 및 수송 등 역학조사 방법론에 관한 사항

- 2) 실무교육: 가축전염병에 대한 역학조사 방법, 가축전염병 발생 시 단계별 대응 조치, 역학조사를 위한 통계 이론 및 실습, 역학조사 분석보고서의 제출·발표, 역학조사의 현안 및 사례 등에 관한 사항

2. 역학조사관에 대한 보수 교육·훈련

가. 역학조사관에 대한 보수 교육·훈련은 연 2회 실시하되, 연간 16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나. 교육·훈련은 가축전염병의 최근 발생 동향, 역학조사 및 대응에 관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여 실시해야 한다.